동탄 A106 어울림 파밀리에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관련 안내 사항
  - ＊ "동탄 A106 어울림 파밀리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동탄-a106-a107.com) 및 견본주택 관람(방문예약제)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방문예약제 관람은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견본주택 방문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 확진자 등은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당첨(예비입주자 포함)자에게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등도 사전 방문예약제(홈페이지를 통한 예약)로 운영될 예정이며, 변경 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탄 A106 어울림 파밀리에" 견본주택 내 분양상담전화(☎ 031-376-884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 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1.25.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805이며, 공고문 및 분양관련 내용은 동탄 A106 어울림 파밀리에 홈페이지(http://www.동탄-a106-a107.com)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화성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공동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 '20.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제한 사항(과거 당첨사실 등) 조회 방법 : 한국부동산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25)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기타 수도권(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의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25.) 현재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2021.11.25.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2022.05.25.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화성시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한 자)에게 공급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1)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부 · 모, 장인 · 장모, 시부 · 시모,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아들 · 딸, 사위 · 며느리, 손자 · 손녀, 외손자 ·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전혼자녀 등)
  2)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 · 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 · 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적용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하시어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③ 네이버인증서 또는 ④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 · 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민 등)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 의무거주기간 미적용)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 · 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란 횡으로 인접한 세대를 포함한 최저층을 말하며, 필로티 등으로 주택이 없는 층은 제외함)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그 경우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되며 (민간 사전청약 포함)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일반공급 세대 중 주택형 85㎡ 미만 주택은 가점제 40%, 추첨제 60% / 주택형 85㎡ 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되신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이 제한되며, 당첨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해당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 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20.11.25.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청약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 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의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을 승낙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를 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동탄-a106-a107.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의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 · 수도권(인천, 경기) · 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합니다.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물량 중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 이전에 입주자로 선정되어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 : 비규제지역인 화성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 입주권 전매 포함) 시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사업자 이외 매수자 본인이 실거래가 신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제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8년	8년

-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별표 3] 제4호가목에 의거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2.12.14.)로부터 8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거주의무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의거하여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단, 해외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재당첨 제한 기간 : 본 아파트는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 1순위 청약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당첨 제한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되신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이 제한되며,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행위 등을 통해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며, 거래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으로 공동 신고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자격검증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 정	12월 05일(월)	12월 06일(화)	12월 07일(수)	12월 14일(수)	12월 15일(목) ~ 12월 25일(일)	12월 26일(월) ~ 12월 30일(금)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제출	견본주택 방문체결
장 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 734-3)	• 견본주택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 734-3)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유의사항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공공택지 개발의 지적공부 절차 이후에 가능하며,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음.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며 이전등기비용은 분양자 부담이며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교관련 유의사항
  – 초등학생은 (가칭)동탄17초(2025년 9월 개교예정)에, 중학생은 동탄2~2중학군에, 고등학생은 화성시 관내 기존 및 신설예정교에 배치될 계획이며 동탄17초는 2025년 9월 이후로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교시기가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입주시기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 학생배치에 관한 내용은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해당 교육지원청의 추진 일정(시기 조정 등) 및 학생 배치여건 변화(관내 공동주택 개발, 학생 수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지원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바랍니다.
  – 본 사업지 인근 및 동탄2택지개발지구의 학교 설립 주체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며,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 수용 계획은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인근학교 배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임. 본 아파트 주변에 교육시설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계획에 의하며, 학교 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단지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분양가격 관련 유의사항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 주택과 – 27732호(2022.11.2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지구 A106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0층 9개동 총 640세대[특별공급 154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14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64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28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20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2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세대수	최하층우선배정세대수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민영주택	2022000805	01	084.4440A	84A	84.4440	25.2446	109.6886	69.1013	178.7899	84.3010	108	10	10	20	3	20	63	45	6
		02	084.6492B	84B	84.6492	26.0417	110.6909	69.2692	179.9601	84.5060	38	4	4	8	1	8	25	13	2
		03	099.6288A	99A	99.6288	29.4353	129.0641	81.5272	210.5913	99.4610	178	0	18	0	5	0	23	155	16
		04	099.6288B	99B	99.6288	29.4353	129.0641	81.5272	210.5913	99.4610	6	0	1	0	1	0	2	4	0
		05	099.8088C	99C	99.8088	29.4772	129.2860	81.6745	210.9605	99.6400	6	0	1	0	1	0	2	4	0
		06	099.6288D	99D	99.6288	29.4353	129.0641	81.5272	210.5913	99.4610	159	0	16	0	5	0	21	138	11
		07	099.9161E	99E	99.9161	30.5086	130.4247	81.7623	212.1870	99.7470	44	0	4	0	1	0	5	39	0
		08	099.9161F	99F	99.9161	30.5086	130.4247	81.7623	212.1870	99.7470	4	0	1	0	1	0	2	2	4
		09	099.8322G	99G	99.8322	29.7274	129.5596	81.6936	211.2532	99.6640	48	0	4	0	1	0	5	43	4
		10	099.8322H	99H	99.8322	29.7274	129.5596	81.6936	211.2532	99.6640	49	0	5	0	1	0	6	43	3
합 계											640	14	64	28	20	28	154	486	46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 이하에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을 혼돈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대지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계약 시 면적이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층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하층으로 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 및 개교시기(관계기관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며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084.4440A	084.6492B	099.6288A	099.6288B	099.8088C	099.6288D	099.9161E	099.9161F	099.8322G	099.8322H
약식표기	84A	84B	99A	99B	99C	99D	99E	99F	99G	99H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약식표기	동별(라인)	층구분	세대수	분양가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계약 시	2차 계약 후 30일이내	1차(10%) 23.04.17.	2차(10%) 23.08.17.	3차(10%) 24.01.17.	4차(10%) 24.06.17.	5차(10%) 24.11.18.	6차(10%) 25.03.17.	입주시(입주지정기간 내)
84A	3703동 1,2,4호 3704동 1,2,4호	1층	3	220,225,920	278,474,080	0	498,700,000	10,000,000	39,870,000	49,870,000	49,870,000	49,870,000	49,870,000	49,870,000	49,870,000	149,610,000
		2층	3	222,566,400	281,433,600	0	504,000,000	10,000,000	4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151,200,000
		3층	6	224,906,880	284,393,120	0	509,300,000	10,000,000	40,930,000	50,930,000	50,930,000	50,930,000	50,930,000	50,930,000	50,930,000	152,790,000
		4층	6	227,247,360	287,352,640	0	514,600,000	10,000,000	41,460,000	51,460,000	51,460,000	51,460,000	51,460,000	51,460,000	51,460,000	154,380,000
		5~9층	30	234,312,960	296,287,040	0	530,600,000	10,000,000	43,060,000	53,060,000	53,060,000	53,060,000	53,060,000	53,060,000	53,060,000	159,180,000
		10층~최상층	60	236,653,440	299,246,560	0	535,900,000	10,000,000	43,590,000	53,590,000	53,590,000	53,590,000	53,590,000	53,590,000	53,590,000	160,770,000
84B	3703동 3호 3704동 3호	1층	2	217,797,120	275,402,880	0	493,200,000	10,000,000	39,320,000	49,320,000	49,320,000	49,320,000	49,320,000	49,320,000	49,320,000	147,960,000
		2층	2	220,137,600	278,362,400	0	498,500,000	10,000,000	39,850,000	49,850,000	49,850,000	49,850,000	49,850,000	49,850,000	49,850,000	149,550,000
		3층	2	222,433,920	281,266,080	0	503,700,000	10,000,000	40,370,000	50,370,000	50,370,000	50,370,000	50,370,000	50,370,000	50,370,000	151,110,000
		4층	2	224,774,400	284,225,600	0	509,000,000	10,000,000	4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152,700,000
		5~9층	10	231,707,520	292,992,480	0	524,700,000	10,000,000	42,470,000	52,470,000	52,470,000	52,470,000	52,470,000	52,470,000	52,470,000	157,410,000
		10층~최상층	20	234,003,840	295,896,160	0	529,900,000	10,000,000	42,990,000	52,990,000	52,990,000	52,990,000	52,990,000	52,990,000	52,990,000	158,970,000
99A	3706동 2,3,5,6호 3707동 2,3,5,6호 3708동 2,3,5,6호 3709동 2,3,5,6호	1층	9	250,424,148	316,705,320	31,670,532	598,800,000	10,000,000	49,880,000	59,880,000	59,880,000	59,880,000	59,880,000	59,880,000	59,880,000	179,640,000
		2층	9	253,100,692	320,090,280	32,009,028	605,200,000	10,000,000	50,520,000	60,520,000	60,520,000	60,520,000	60,520,000	60,520,000	60,520,000	181,560,000
		3층	16	255,735,415	323,422,350	32,342,235	611,500,000	10,000,000	51,150,000	61,150,000	61,150,000	61,150,000	61,150,000	61,150,000	61,150,000	183,450,000
		4층	16	258,411,959	326,807,310	32,680,731	617,900,000	10,000,000	51,790,000	61,790,000	61,790,000	61,790,000	61,790,000	61,790,000	61,790,000	185,370,000
		5~9층	80	266,399,770	336,909,300	33,690,930	637,000,000	10,000,000	5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191,100,000
		10층~최상층	48	269,076,314	340,294,260	34,029,426	643,400,000	10,000,000	54,340,000	64,340,000	64,340,000	64,340,000	64,340,000	64,340,000	64,340,000	193,020,000
99B	3701동 5호 3702동 5호	5~9층	3	266,399,770	336,909,300	33,690,930	637,000,000	10,000,000	5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191,100,000
		10층~최상층	3	269,076,314	340,294,260	34,029,426	643,400,000	10,000,000	54,340,000	64,340,000	64,340,000	64,340,000	64,340,000	64,340,000	64,340,000	193,020,000
99C	3701동 5호 3702동 5호	5~9층	3	264,768,751	334,846,590	33,484,659	633,100,000	10,000,000	53,310,000	63,310,000	63,310,000	63,310,000	63,310,000	63,310,000	63,310,000	189,930,000
		10층~최상층	3	267,445,295	338,231,550	33,823,155	639,500,000	10,000,000	53,950,000	63,950,000	63,950,000	63,950,000	63,950,000	63,950,000	63,950,000	191,850,000
99D	3701동 1,2,3,5호 3702동 1,2,3,5호 3705동 1,2,4호	1층	8	250,424,148	316,705,320	31,670,532	598,800,000	10,000,000	49,880,000	59,880,000	59,880,000	59,880,000	59,880,000	59,880,000	59,880,000	179,640,000
		2층	9	253,100,692	320,090,280	32,009,028	605,200,000	10,000,000	50,520,000	60,520,000	60,520,000	60,520,000	60,520,000	60,520,000	60,520,000	181,560,000
		3층	11	255,735,415	323,422,350	32,342,235	611,500,000	10,000,000	51,150,000	61,150,000	61,150,000	61,150,000	61,150,000	61,150,000	61,150,000	183,450,000
		4층	11	258,411,959	326,807,310	32,680,731	617,900,000	10,000,000	51,790,000	61,790,000	61,790,000	61,790,000	61,790,000	61,790,000	61,790,000	185,370,000
		5~9층	49	266,399,770	336,909,300	33,690,930	637,000,000	10,000,000	5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191,100,000
		10층~최상층	71	269,076,314	340,294,260	34,029,426	643,400,000	10,000,000	54,340,000	64,340,000	64,340,000	64,340,000	64,340,000	64,340,000	64,340,000	193,020,000
99E	3706동 1호 3707동 1호 3708동 1호 3709동 1호	2층	4	250,633,253	316,969,770	31,696,977	599,300,000	10,000,000	49,930,000	59,930,000	59,930,000	59,930,000	59,930,000	59,930,000	59,930,000	179,790,000
		3층	4	253,267,976	320,301,840	32,030,184	605,600,000	10,000,000	50,560,000	60,560,000	60,560,000	60,560,000	60,560,000	60,560,000	60,560,000	181,680,000
		4층	4	255,902,699	323,633,910	32,363,391	611,900,000	10,000,000	51,190,000	61,190,000	61,190,000	61,190,000	61,190,000	61,190,000	61,190,000	183,570,000
		5~9층	20	263,806,868	333,630,120	33,363,012	630,800,000	10,000,000	53,080,000	63,080,000	63,080,000	63,080,000	63,080,000	63,080,000	63,080,000	189,240,000
		10층~최상층	12	266,441,591	336,962,190	33,696,219	637,100,000	10,000,000	53,710,000	63,710,000	63,710,000	63,710,000	63,710,000	63,710,000	63,710,000	191,130,000
99F	3706동 1호 3707동 1호 3708동 1호 3709동 1호	1층	4	243,816,430	308,348,700	30,834,870	583,000,000	10,000,000	4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174,900,000
99G	3706동 4호 3707동 4호 3708동 4호 3709동 4호	1층	4	246,367,511	311,574,990	31,157,499	589,100,000	10,000,000	48,910,000	58,910,000	58,910,000	58,910,000	58,910,000	58,910,000	58,910,000	176,730,000
		2층	4	248,960,413	314,854,170	31,485,417	595,300,000	10,000,000	49,530,000	59,530,000	59,530,000	59,530,000	59,530,000	59,530,000	59,530,000	178,590,000
		3층	4	251,595,136	318,186,240	31,818,624	601,600,000	10,000,000	50,160,000	60,160,000	60,160,000	60,160,000	60,160,000	60,160,000	60,160,000	180,480,000
		4층	4	254,229,859	321,518,310	32,151,831	607,900,000	10,000,000	50,790,000	60,790,000	60,790,000	60,790,000	60,790,000	60,790,000	60,790,000	182,370,000
		5~9층	20	262,092,207	331,461,630	33,146,163	626,700,000	10,000,000	52,670,000	62,670,000	62,670,000	62,670,000	62,670,000	62,670,000	62,670,000	188,010,000
		10층~최상층	12	264,685,109	334,740,810	33,474,081	632,900,000	10,000,000	53,290,000	63,290,000	63,290,000	63,290,000	63,290,000	63,290,000	63,290,000	189,870,000
99H	3701동 4호 3702동 4호 3705동 3호	1층	3	246,367,511	311,574,990	31,157,499	589,100,000	10,000,000	48,910,000	58,910,000	58,910,000	58,910,000	58,910,000	58,910,000	58,910,000	176,730,000
		2층	3	248,960,413	314,854,170	31,485,417	595,300,000	10,000,000	49,530,000	59,530,000	59,530,000	59,530,000	59,530,000	59,530,000	59,530,000	178,590,000
		3층	3	251,595,136	318,186,240	31,818,624	601,600,000	10,000,000	50,160,000	60,160,000	60,160,000	60,160,000	60,160,000	60,160,000	60,160,000	180,480,000
		4층	3	254,229,859	321,518,310	32,151,831	607,900,000	10,000,000	50,790,000	60,790,000	60,790,000	60,790,000	60,790,000	60,790,000	60,790,000	182,370,000
		5~9층	15	262,092,207	331,461,630	33,146,163	626,700,000	10,000,000	52,670,000	62,670,000	62,670,000	62,670,000	62,670,000	62,670,000	62,670,000	188,010,000
		10층~최상층	22	264,685,109	334,740,810	33,474,081	632,900,000	10,000,000	53,290,000	63,290,000	63,290,000	63,290,000	63,290,000	63,290,000	63,290,000	189,870,000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 중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85㎡초과 주택 부가가치세 적용)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및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포함) 및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연납부(소유권보존등기시 등)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미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유상)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유상)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추가선택 품목 계약일 별도 통보)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 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료 납부 시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계약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되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이자후불제가 적용되며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 및 본인의 부적격 사유, 정부정책에 따른 대출제한 등으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사업주체, 시공사 및 중도금 대출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에서 중도금 대출 신청 건에 한하여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 등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에서 대납해 주며, 입주지정기간 입주지정기간에 지정한 기일 내에 시행위탁자에서 대납한 이자를 계약자는 시행수탁자에게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선납금액에 대하여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불가)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 주체가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A	84B	99A	99B	99C	99D	99E	99F	99G	99H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1	0	0	0	0	0	0	0	0	2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0	0	0	0	0	0	0	0	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0	0	0	0	0	0	0	0	0	1
	중소기업 근로자		3	1	0	0	0	0	0	0	0	0	4
	장애인	경기도	2	1	0	0	0	0	0	0	0	0	3
		서울특별시	1	0	0	0	0	0	0	0	0	0	1
		인천광역시	1	0	0	0	0	0	0	0	0	0	1
	계		10	4	0	0	0	0	0	0	0	0	1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5	2	9	1	1	8	2	1	2	3	34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거주자(50%)		5	2	9	0	0	8	2	0	2	2	30
	계		10	4	18	1	1	16	4	1	4	5	64
신혼부부 특별공급			20	8	0	0	0	0	0	0	0	0	2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	1	5	1	1	5	1	1	1	1	20
생애최초 특별공급			20	8	0	0	0	0	0	0	0	0	28
합 계			63	25	23	2	2	21	5	2	5	6	154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화성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철거민 제외
※ 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추천기관 ① 장애인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② 국가유공자 등 :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 :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④ 10년 장기복무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⑤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 · 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당첨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총 1,256세대　A106 640세대　A107 616세대

문의 031) 376-8840

동탄 A107 숨마데시앙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관련 안내 사항
  - ＊ "동탄 A107 숨마데시앙"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동탄-a106-a107.com) 및 견본주택 관람(방문예약제)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방문예약제 관람은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견본주택 방문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 확진자 등은 입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당첨(예비입주자 포함)자에게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등도 사전 방문예약제(홈페이지를 통한 예약)로 운영될 예정이며, 변경 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탄 A107 숨마 데시앙" 견본주택 내 분양상담전화(☎ 031-376-884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 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1.25.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807이며, 공고문 및 분양관련 내용은 동탄 A107 숨마데시앙 홈페이지 (http://www.동탄-a106-a107.com)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화성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공동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 '20.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제한 사항(과거 당첨사실 등) 조회 방법 : 한국부동산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25.)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기타 수도권(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의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25.) 현재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2021.11.25.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2022.05.25.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화성시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한 자)에게 공급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1)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부 · 모, 장인 · 장모, 시부 · 시모,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아들 · 딸, 사위 · 며느리, 손자 · 손녀, 외손자 ·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전혼자녀 등)
  2)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 · 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 · 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다자녀	노부모부양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필요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③ 네이버인증서 또는 ④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 · 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 의무거주기간 미적용)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 · 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주택형 85㎡ 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 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20.11.25.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 · 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동탄-a106-a107.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 · 수도권(인천, 경기) · 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5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화성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8년	8년

-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별표 3] 제4호가목에 의거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2.12.13.)로부터 8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거주의무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의거하여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5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다만, 2022.11.25. 현재 해당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거주의무 기간에서 제외 가능으로 봄)
-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재당첨 제한 기간 : 본 아파트는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이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당첨 제한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이 제한되며,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당첨 제한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벌된 경우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청약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며, 거래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인지세법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사이트 :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전매)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액(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증서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계약서에서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여부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의 미납 시 미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다자녀, 노부모부양)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자격검증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정	12월 05일(월)	12월 06일(화)	12월 07일(수)	12월 13일(화)	12월 15일(목) ~ 12월 25일(일)	12월 26일(월) ~ 12월 30일(금)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제출	견본주택 방문체결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 734-3)	• 사업주체 견본주택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 734-3)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단, 은행의 영업점별 영업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 상담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유의사항**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공공택지 개발의 지적공부 정리 이후에 가능하며,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음,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며 이전등기비용은 분양자 부담이며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교관련 유의사항**
  – 초등학생은 (가칭)동탄17초(2025년 9월 개교예정)에, 중학생은 동탄2-2중학군에, 고등학생은 화성시 관내 기존 및 신설예정교에 배치될 계획이며 동탄17초는 2025년 9월 이후로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입주시기 조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학생배치에 관한 내용은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해당 교육지원청의 추진 일정(시기 조정 등) 및 학생 배치여건 변화(관내 공동주택 개발, 학생 수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지원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바랍니다.
  – 본 사업지 인근 및 동탄택지개발지구의 학교 설립 계획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방침에 따라,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 수용 등은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인근학교 배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임. 본 아파트 주변에 교육시설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학교 설립여부 및 개교 시기는 사업주체와 무관함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분양가격 관련 유의사항**
  – 「주택법」 제57조에 의거 당첨자에게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 주택과 – 27733호(2022.11.2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지구 A107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2층 10개동 총 616세대[특별공급 81세대(다자녀가구특별공급 62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계		
민영주택	2022000807	01	099.7498A	99A	99.7498	27.4439	127.1937	77.1577	204.3514	97.8707	352	35	10	45	307	32
		02	099.7498B	99B	99.7498	27.4439	127.1937	77.1577	204.3514	97.8707	6	1	1	2	4	0
		03	099.9298C	99C	99.9298	27.4822	127.4120	77.2969	204.7089	98.0473	6	1	1	2	4	0
		04	099.9161E	99E	99.9161	28.4857	128.4018	77.2863	205.6881	98.0339	11	1	1	2	9	0
		05	099.9161F	99F	99.9161	28.4857	128.4018	77.2863	205.6881	98.0339	1	0	0	0	1	1
		06	099.8322G	99G	99.8322	27.7061	127.5383	77.2214	204.7597	97.9515	120	12	3	15	105	10
		07	109.8514A	109A	109.8514	30.1900	140.0414	84.9713	225.0127	107.7820	72	7	1	8	64	6
		08	109.3638B	109B	109.3638	30.3230	139.6868	84.5942	224.2810	107.3036	48	5	2	7	41	4
			합 계								616	62	19	81	535	53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계산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되었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달라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대지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 등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정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격 시 면적이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 동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하층으로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 및 개요시기(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통보해드릴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으로 호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시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하여 당첨 시 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하며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시 일반공급과 함께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물량에 미달할 경우 남는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며 미달 물량이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099.7498A	099.7498B	099.9298C	099.9161E	099.9161F	099.8322G	109.8514A	109.3638B
약식표기	99A	99B	99C	99E	99F	99G	109A	109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약식표기	동별(라인)	층구분	세대수	분양가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계약시	2차 계약 후 30일이내	1차(10%) 23.04.17.	2차(10%) 23.08.17.	3차(10%) 24.01.17.	4차(10%) 24.06.17.	5차(10%) 24.11.18.	6차(10%) 25.03.17.	입주시 (입주지정일기간내)
99A	3711동 1,2,3,5,6호 3712동 2,3,5,6호 3713동 3,5,6호 3714동 3,5,6호 3715동 3,5,6호 3716동 3호 3717동 1,2,4호 3718동 1,3,4호 3719동 1,2,3,5,6호 3720 1,3호	1층	22	260,482,728	315,197,520	31,519,752	607,200,000	10,000,000	50,720,000	60,720,000	60,720,000	60,720,000	60,720,000	60,720,000	60,720,000	182,160,000
		2층	22	263,271,163	318,571,670	31,857,167	613,700,000	10,000,000	51,370,000	61,370,000	61,370,000	61,370,000	61,370,000	61,370,000	61,370,000	184,110,000
		3층	32	266,059,598	321,945,820	32,194,582	620,200,000	10,000,000	52,020,000	62,020,000	62,020,000	62,020,000	62,020,000	62,020,000	62,020,000	186,060,000
		4층	32	268,805,134	325,268,060	32,526,806	626,600,000	10,000,000	52,660,000	62,660,000	62,660,000	62,660,000	62,660,000	62,660,000	62,660,000	187,980,000
		5층~9층	154	277,127,540	335,338,600	33,533,860	646,000,000	10,000,000	5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193,800,000
		10층~최상층	92	279,915,975	338,712,750	33,871,275	652,500,000	10,000,000	55,250,000	65,250,000	65,250,000	65,250,000	65,250,000	65,250,000	65,250,000	195,750,000
99B	3711동 6호 3719동 6호	4층	1	268,805,134	325,268,060	32,526,806	626,600,000	10,000,000	52,660,000	62,660,000	62,660,000	62,660,000	62,660,000	62,660,000	62,660,000	187,980,000
		5층~9층	3	277,127,540	335,338,600	33,533,860	646,000,000	10,000,000	5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193,800,000
		10층~최상층	2	279,915,975	338,712,750	33,871,275	652,500,000	10,000,000	55,250,000	65,250,000	65,250,000	65,250,000	65,250,000	65,250,000	65,250,000	195,750,000
99C	3711동 6호 3719동 6호	4층	1	267,132,073	323,243,570	32,324,357	622,700,000	10,000,000	52,270,000	62,270,000	62,270,000	62,270,000	62,270,000	62,270,000	62,270,000	186,810,000
		5층~9층	3	275,454,479	333,314,110	33,331,411	642,100,000	10,000,000	54,210,000	64,210,000	64,210,000	64,210,000	64,210,000	64,210,000	64,210,000	192,630,000
		10층~최상층	2	278,242,914	336,688,260	33,668,826	648,600,000	10,000,000	54,860,000	64,860,000	64,860,000	64,860,000	64,860,000	64,860,000	64,860,000	194,580,000
99E	3712동 1호	2층	1	260,439,829	315,145,610	31,514,561	607,100,000	10,000,000	50,710,000	60,710,000	60,710,000	60,710,000	60,710,000	60,710,000	60,710,000	182,130,000
		3층	1	263,185,365	318,467,850	31,846,785	613,500,000	10,000,000	51,350,000	61,350,000	61,350,000	61,350,000	61,350,000	61,350,000	61,350,000	184,050,000
		4층	1	265,930,901	321,790,090	32,179,009	619,900,000	10,000,000	51,990,000	61,990,000	61,990,000	61,990,000	61,990,000	61,990,000	61,990,000	185,970,000
		5층~9층	5	274,167,509	331,756,810	33,175,681	639,100,000	10,000,000	53,910,000	63,910,000	63,910,000	63,910,000	63,910,000	63,910,000	63,910,000	191,730,000
		10층~최상층	3	276,913,045	335,079,050	33,507,905	645,500,000	10,000,000	54,550,000	64,550,000	64,550,000	64,550,000	64,550,000	64,550,000	64,550,000	193,650,000
99F	3712동 1호	1층	1	253,447,292	306,684,280	30,668,428	590,800,000	10,000,000	49,080,000	59,080,000	59,080,000	59,080,000	59,080,000	59,080,000	59,080,000	177,240,000
99G	3711동 4호 3712동 4호 3713동 4호 3714동 4호 3715동 4호 3716동 4호 3717동 3호 3718동 2호 3719동 4호 3720동 2호	1층	10	255,978,333	309,746,970	30,974,697	596,700,000	10,000,000	49,670,000	59,670,000	59,670,000	59,670,000	59,670,000	59,670,000	59,670,000	179,010,000
		2층	10	258,723,869	313,069,210	31,306,921	603,100,000	10,000,000	50,310,000	60,310,000	60,310,000	60,310,000	60,310,000	60,310,000	60,310,000	180,930,000
		3층	10	261,426,506	316,339,540	31,633,954	609,400,000	10,000,000	50,940,000	60,940,000	60,940,000	60,940,000	60,940,000	60,940,000	60,940,000	182,820,000
		4층	10	264,172,042	319,661,780	31,966,178	615,800,000	10,000,000	51,580,000	61,580,000	61,580,000	61,580,000	61,580,000	61,580,000	61,580,000	184,740,000
		5층~9층	50	272,322,852	329,524,680	32,952,468	634,800,000	10,000,000	53,480,000	63,480,000	63,480,000	63,480,000	63,480,000	63,480,000	63,480,000	190,440,000
		10층~최상층	30	275,025,489	332,795,010	33,279,501	641,100,000	10,000,000	54,110,000	64,110,000	64,110,000	64,110,000	64,110,000	64,110,000	64,110,000	192,330,000
109A	3713동 2호 3714동 2호 3715동 2호 3716동 2,5,6호	1층	6	278,200,015	336,636,350	33,663,635	648,500,000	10,000,000	54,850,000	64,850,000	64,850,000	64,850,000	64,850,000	64,850,000	64,850,000	194,550,000
		2층	6	281,160,046	340,218,140	34,021,814	655,400,000	10,000,000	55,540,000	65,540,000	65,540,000	65,540,000	65,540,000	65,540,000	65,540,000	196,620,000
		3층	6	284,120,077	343,799,930	34,379,993	662,300,000	10,000,000	56,230,000	66,230,000	66,230,000	66,230,000	66,230,000	66,230,000	66,230,000	198,690,000
		4층	6	287,080,108	347,381,720	34,738,172	669,200,000	10,000,000	56,920,000	66,920,000	66,920,000	66,920,000	66,920,000	66,920,000	66,920,000	200,760,000
		5층~9층	30	295,960,201	358,127,090	35,812,709	689,900,000	10,000,000	58,990,000	68,990,000	68,990,000	68,990,000	68,990,000	68,990,000	68,990,000	206,970,000
		10층~최상층	18	298,920,232	361,708,880	36,170,888	696,800,000	10,000,000	59,680,000	69,680,000	69,680,000	69,680,000	69,680,000	69,680,000	69,680,000	209,040,000
109B	3713동 1호 3714동 1호 3715동 1호 3716동 1호	1층	4	271,936,761	329,057,490	32,905,749	633,900,000	10,000,000	53,390,000	63,390,000	63,390,000	63,390,000	63,390,000	63,390,000	63,390,000	190,170,000
		2층	4	274,853,893	332,587,370	33,258,737	640,700,000	10,000,000	54,070,000	64,070,000	64,070,000	64,070,000	64,070,000	64,070,000	64,070,000	192,210,000
		3층	4	277,728,126	336,065,340	33,606,534	647,400,000	10,000,000	54,740,000	64,740,000	64,740,000	64,740,000	64,740,000	64,740,000	64,740,000	194,220,000
		4층	4	280,645,258	339,595,220	33,959,522	654,200,000	10,000,000	55,420,000	65,420,000	65,420,000	65,420,000	65,420,000	65,420,000	65,420,000	196,260,000
		5층~9층	20	289,310,856	350,081,040	35,008,104	674,400,000	10,000,000	57,440,000	67,440,000	67,440,000	67,440,000	67,440,000	67,440,000	67,440,000	202,320,000
		10층~최상층	12	292,227,988	353,610,920	35,361,092	681,200,000	10,000,000	58,120,000	68,120,000	68,120,000	68,120,000	68,120,000	68,120,000	68,120,000	204,360,000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 중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및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포함) 및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해야 하며, 지연납부(소유권보존등기시 등)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미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유상)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유상)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추가선택 품목 계약일 별도 통보)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 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료 납부 시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되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이자후불제가 적용되며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 및 본인의 부적격 사유, 정부정책에 따른 대출제한 등으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춰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사업주체, 시공사 및 중도금 대출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에서 중도금 대출 신청건에 한하여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 등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에서 대납해 주며, 입주시점에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내에 시행위탁자에서 대납한 이자를 계약자는 시행수탁자에게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선납금액에 대하여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불가)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 주체가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99A	99B	99C	99E	99F	99G	109A	109B	합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18	1	1	1	0	6	4	3	34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거주자(50%)	17	0	0	0	0	6	3	2	28
	계	35	1	1	1	0	12	7	5	6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0	1	1	1	0	3	1	2	19
합 계		45	2	2	2	0	15	8	7	8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 포함) 제한]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화성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